

전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1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66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2127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 1. 8 선고 2018가소90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조합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 선고 2020. 7. 23.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 1. 8. 선고 2018가소 90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1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및 대월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여원금'란 기재 돈을 B에게 대여하였다.

1	2012-03-30	3,000만원	고정1)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연 9.5%	연체 30일 이내 연 8% 가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	매월 31일	2014-03-30(2018-03-30 로 연장)
2	2013-10-13	3,000만 원	고정2)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연 7.5%	연체 30일 이내 연 6.5% 가산	상동	매월 18일	2016-10-18(2017-10-18 로 연장)
3	2014-04-29	7,000만 원	고정3)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연 6.5%	연체 30일 이내 연 8.5% 가산	상동	매월 29일	2017-04-29(2018-04-29 로 연장)
4	2015-03-24	2,000만원	변동 12월4)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최소 연 6.5%	- 연체 30일 이내 연 5%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7% 가산- 연체 90일 초과 연 9% 가산	대월금은 자유로이 수시로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	조합에서 정한 결산일에 전액 상환	2017-03-24

나. 원고는 B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 및 대월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2015. 3. 24.자 채권은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2002-03-05	근저당권설정계약	-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담보 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채권최고액: 2,600만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0606호
2	2007-03-21	근저당권설정계약	-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담보 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채권최고액: 1,300만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4601호
3	2007-03-21	지상권설정계약	- 채권자 및 지상권자: 원고- 채무자: B- 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목적: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2017. 3. 21.부터 만 30년- 자료: 없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4602호
4	2013-10-16	근저당권설정계약	-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담보 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채권최고액: 3,900만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2036호
5	2014-04-29	근저당권설정계약	-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담보 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채권최고액: 9,100만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8900호
6	2015-03-24	근저당권설정계약	-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담보 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채권최고액: 2,600만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3865호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7. 11. 7. D로 청구금액을 156,165,908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는데,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원금은 청구금액 제1항 부분에 합산하여 전체 원금을 기재하였으나,

청구금액 제2항 부분에서는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의 원금 2,000만 원만을 기재하고 다른 채권들과는 달리 이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자 합계액인 6,165,908원에는 2015. 3. 24.자 자립대월금에 대한 이자는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금액: 금 156,165,908원

1. 원금 150,000,000원 가. 2012. 3. 24., 나. 2013. 10. 18., 다. 2014. 4. 29. 대여금, 라. 2015. 3. 24. 자립대월금

2. 이자 합계 금 6,165,908원 :

가. 원금 30,000,000원 2012. 3. 24. 대여금

이자 금 1,709,968원(= 위 돈 및 이에 대한 본 이자금 1,147,808원(원금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10. 24.까지 147일간 연 9.5%) + 이자연체금 3,256원(2017. 7. 3.부터 2017. 7. 31.까지 29일간 연 17.5% + 잔액연체금 558,904원(2017. 8. 1.부터 2017. 10. 24.까지 85일간 연 8%))

나. 원금 30,000,000원 2013. 10. 18. 대여금

이자 금 1,245,734원(= 위 돈 및 이에 대한 본 이자금 789,041원(2017. 6. 19.부터 2017. 10. 24.까지 128일간 연 7.5%) + 이자연체금 2,585원(2017. 7. 19.부터 2017. 8. 20.까지 33일간 연 16%) + 잔액연체금 412,191원(2017. 8. 21.부터 2017. 10. 18.까지 59일간 연 8.5%) + 만기 후 연체금 41,917원(2017. 10. 19.부터 2017. 10. 24.까지 6일간 연 8.5%))

다. 원금 70,000,000원 2014. 4. 29. 대여금

이자 금 3,210,206원(=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본 이자금 1,820,000원(2017. 6. 1.부터 2017. 10. 24.까지 146일간 연 6.5%) + 이자연체금 4,590원(2017. 6. 30.부터 2017. 7. 31.까지 32일간 연 15%) + 잔액연체금 1,385,616원(2017. 8. 1.부터 2017. 10. 24.까지 85일간 연 8.5%))

라. 원금 20,000,000원 2015. 3. 24. 자립대월금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신청원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이자율,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기재하였는데, 청구금액의 제2의 라항 부분에서 원금만을 기재했던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5. 3. 24. 채무자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대월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인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o. 이자율 등 - 변동 12월(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최초 연 6.5%
- o. 지연배상금율 - 가. 연체 30일 이내 연 5% 가산, 나.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7%, 다. 연체 90일 초과 연 9% 가산
- o. 이자지급시기 - 조합에서 정한 결산일에 전액 상환
- o. 상환방법 - 대월금은 자유로이 수시로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 o. 대출기간 만료일 - 2017. 3. 24.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2015. 3. 24.자 자립대월금의 이자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7. 11. 3. 이 사건 경매신청서상 "라호 원금 20,000,000원 2015. 3. 24. 자립예탁금5) "을 "라호 원금 20,000,000원 2015. 3. 24. 자립예탁금, 이자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5%의 지연이자로 정함"이라고 정정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18. 8. 13. "원금: 150,000,000원, 이자: 14,532,973원, 연체이자 9,446,590원, 비용: 3,850,000원, 합계: 177,829,563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 3,533,869원을 공제한 나머지 197,486,035원은 1순위로 익산시에 100,380원(당해세)이 먼저 배당되고, 그 다음 2순위로 원고에게 156,165,908원이 배당되었으며, 그 나머지가 3순위로 군산세무서에 8,851,207원, 북전주세무서에 32,368,540원이 각 배당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은 2018. 9. 13.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원고는 청구금액에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에 대한 이자 부분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신청원인에는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에 대한 이자

역시 포함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2017. 11. 1. 위 채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및 지연이자)를 모두 배당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상 배당기일인 2018. 9. 13.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 173,979,563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14,532,973원 + 연체이자 9,446,590원)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 시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56,165,908원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배당금 17,813,655원(= 173,979,563원 - 156,165,908원)은 군산세무서와 북전주세무서에 잘못 배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배당된 배당금 17,813,655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아래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에 대한 이자 부분을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최초 경매신청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156,165,908원⁶⁾이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확정된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의 경매청구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의 배당은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경매신청서상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 시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에 대한 이자인 225,032원(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명세서에 따라 산정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기간이나 이자율 등 그 계산 근거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 구체적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 특징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의 이자가 이 사건 원고의 경매청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매신청 시 경매청구채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상의 금액과 신청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상의 이자 항목에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을 원본 채권으로 기재한 점, 신청원인에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 대한 이자율 등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2항 라호 금 20,000,000원7) 에 대한 2017. 8. 30.부터 연 11.5%의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등"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서상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의 이자 역시 부대채권으로서 이 사건 원고의 경매청구채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상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7. 11. 3. 그와 같은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원고의 경매청구채권에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이자 등은 이 사건 경매신청시인 2017. 10. 26.까지만 경매청구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청구채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상의 금액과 신청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서 중 신청원인 제5항에는, "채권자는 위 2항8)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자 등 6,165,908원 합계 금 156,165,908원과 그 중 2항 가호 금 30,000,000원에 대한 2017. 10. 24.부터 연 17.5%의, 그 중 2항 나호 금 30,000,000원에 대한 2017. 10. 25.부터 연 17.5%의, 그 중 2항 다호 금 70,000,000원에 대한 2017. 10. 25.부터 연 15%의, 그 중 2항 라호 금 20,000,000원9)에 대한 2017. 8. 30.부터 연 1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경매신청일 직전의 특정 일자인 2017. 10.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이자만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였지만, 개괄적으로 위 2017. 10. 24. 이후의 이자나 지연이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8. 1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청구채권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기일(2018. 9. 13.)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원고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2015. 3. 24.자 자립대월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2015. 3. 24.자 자립대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2017. 10. 25.부터 배당기일인 2018. 9. 13.까지의 각 이자 및 지연이자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17,813,655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군산세무서 및 북전주세무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813,65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김범준

판사이슬아

별지

- 1)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2)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3)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4)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5) 신청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5. 3. 24.자 자립대월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6) 정확히 말하면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 중 이자 항목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각 지체 시작일로부터 이 사건 경매신청일이 아닌 2017. 10. 24.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합계 6,165,908원으로 기재하였다.
- 7)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을 의미한다.
- 8) 이 사건 경매신청서 중 신청원인 제2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청원인 제2항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 이자율, 만기일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 9) 2015. 3. 24.자 자립대월금 채권을 의미한다.